

포 항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54호 2009. 11. 10(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항 시

- 시장지시사항..... 2
- ◀ 조 려 ▶
-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제963호) 3
- 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64호) 6
-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제965호) 10
-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제966호) 11
- ◀ 입법예고 ▶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1158호) 12
-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09-1164호)..... 19
-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2009-1170호) 22
- 第160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제9호) 28

회								
람								

시장 지시사항

- 2009. 11. 9(월) 확대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1. 9)	<p>○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 드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냈음. 치하와 함께 감사를 드림. - 이제 한해를 잘 마무리 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람. <p>○ 스틸러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매우 값집. 선수·감독 및 구단, 응원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 드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틸러스 우승은 감독이하 선수가 열심히한 결과물 이지만, 보이지 않은 것도 많은데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해준 많은 시민 및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함. - '06년 후기리그(취임초)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스틸러스가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직원 여러분의 도움이 아주 컸음. - 11.7일 일본 도쿄의 결승전은 우리 포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고, 스틸러스 우승은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포항' 의 도시마케팅 및 홍보 효과를 얻었음. - 앞으로 계속해서 스틸러스에 대한 열정적인 응원을 기대하며 다시한번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림. <p>○ 기업체 본사 포항이전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에 공장 가동중인 기업체에 대해서 본사가 이전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추진하기 바람. <p>○ 각종 예산확보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은 영일만 르네상스를 여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확보 철저 <p>○ 쌀 소비운동 적극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직자는 쌀소비 홍보 마인드를 갖고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 쌀막걸리, 동동주먹기 운동 및 음주문화 바꾸기로 쌀소비를 촉진하는데 직원들이 솔선 수범하여 실천해주시기 바람. - 동동주를 포항 과메기와 연결하여 함께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 음면동장은 개발자문위원회와 협조하여 자체 쌀소비 촉진운동 전개 및 대시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p>○ 과메기 성수기철로 홍보에 만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특미 과메기는 전국에 음식화 되었고, 연간 약3,3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 - 과메기 성수기를 맞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택배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택배포장 속내지를 활용 하여 포항홍보, 과메기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p>전 부 서</p> <p>전 부 서</p> <p>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p> <p>전 부 서 기획예산과</p> <p>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읍 면 동</p> <p>해양수산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플루 예방 철저 - 정부는 신종플루 심가단계를 발표하였음. 각별한 관심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산불예방 철저 - 산불의 원인은 인제가 대부분임.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갖고 확실한 책임제를 시행하기 바라며, - 산불은 현장에서 뛰는 만큼 발생하지 않으므로 읍면동장, 구청장은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 제로화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각종 사고예방 철저 - 행락철이 이어지면서 사건사고,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건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 농촌 일손돕기 추진 - 농촌 일손돕기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 불우 이웃돕기 운동 전개 - 불우한 이웃과 함께 인정이 넘치고 훈훈한 포향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기 바람. 	<p>남·북구보건소</p> <p>도시녹지과 남·북구청 읍면동</p> <p>전 부 서</p> <p>농축산과</p> <p>사회복지과</p>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10일

포항시 조례 제 963 호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제3조(심의대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과제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3.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하여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②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집행 시에는 사전 심의위원회

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용역과제 사전심사 대상 사업 중 건설, 통신, 전기 등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공사설계용역을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또한 공사설계용역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기술적·타당성 조사, 사업물량 조사 및 설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용역 과제 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성과품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히 명시(안 제3조)

- (1) 학술용역과제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2) 종합기술용역과제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3) 심사제외 대상사업 : 공사설계용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나.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성과품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 (1)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 (2) 국가예산 확보 등 공통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시 사전에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토록 명확히 규정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10일

포항시 조례 제 964 호

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등
-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
- 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
 -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내용)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진흥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과 사업자 또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위원회

제15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진흥계획의 수립
- 2. 진흥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권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포항시의회 의원
-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
- 3. 초·중·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자
-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준용 등)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 협력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가. 복잡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고 이를 산업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시민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포항이 미래성장동력을 가진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진흥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과 기본이념, 책무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과 사업화 촉진 및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의 협력,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권리침해의 분쟁방지 조치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마. 권한의 일부를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10일

포항시 조례 제 965 호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지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08.1.1)에 따라 「호적법」,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7.23)

○ 과태료 부과·징수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권한 위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정('07.11.28) ' 08.1.1부터 시행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호적법」이 폐지됨('07.7.23).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 07.11.28)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10일

포항시 조례 제 966 호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응하고” 를 “응한다.” 로 하고,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기능)</p> <p>①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 협의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p> <p>1. ~ 5.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2조(기능)</p> <p>①.....</p> <p>.....</p> <p>.....응한다. 이하 삭제.</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긴급을 요하는 민간복지 지원의 신속한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라는 요구로 인한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긴급복지업무의 신속한 지원 결정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 운영코자 함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09 - 1158호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5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를 준용,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 나. 노인복지시설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안 제20조)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2009년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함.
- 라. 한국노동교육원·운수연수원·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안제8조)
- 마.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8조)
- 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 사.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
- 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폐지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안 제16조)
- 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가 있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효과 기대.(안 제23조)
- 차.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
- 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및 종업원할)을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

- 타. 본문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안 제28조)
- 파. 감면신청서식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하므로 감면조례의 서식을 폐지(안 제29조)
- 하. 기타 현행 조례의 법문장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표기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함.

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호, 7503호, 8605호, 2009.10)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함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2486, 팩스 : 054-270-2490, E-mail : tax0915@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 임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포항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 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 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 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해당 공동 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언어 「지방세법 시행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온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 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포항시공고 제2009 - 1164호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11. 09.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설대관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모금규정이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연장 사용료 특례조항을 폐지하여 시설사용 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2(대관에 의한 모금)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
-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공연에 대한 사용료 특례조항 폐지로 타 목적 시설사용자와의 형평성 유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1. 28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시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 ☎272-3032, FAX270-5490)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속시설과” 를 “부속시설을”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4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1과”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①” 을 삭제하고,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8조 제목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을 “사용료의 감면” 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은 삭제한다.

제10조(관람료) ① 포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징수하되 관람권은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을 마친 직후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④ 제10조의2에 따른 회원과 2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하는 단체관람객에 대하여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14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생 략)</p> <p>1. “회관” 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및 그 <u>부속시설과</u> 말한다.</p> <p>2. ~ 4. (생 략)</p> <p>5. “사용자” 라 함은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사용자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6. ~ 7. (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u>부속시설을</u>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u>제4조에 따른</u> -----</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대관의 범위)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p> <p>1. ~ 2.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대관의 범위)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관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 략)</p>	<p>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허가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② (생 략)</p>	<p>제6조(허가취소 등)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u>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u>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u>삭 제</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u>각호의 1</u>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제9조(사용료 반환)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제10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u>사용행사를</u>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u>관람료는</u> 관람권, 입장권(이하 “<u>관람권</u>”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u>관람권은</u> 발매전에 <u>관장의</u>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u>관람권은</u> 무효로 한다.</p> <p>③ <u>관람권의</u> 수표는 <u>회관에서</u> 전담하되 예매는 위탁 판매할 수 있다.</p>	<p>제10조(관람료) ① <u>포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u> 공연 시 <u>관람료를</u> 징수할 수 있다.</p> <p>② <u>관람료는</u> 관람권, 입장권(이하 “<u>관람권</u>”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u>관람권은</u> 미리 <u>관장의</u> 승인을 받아 <u>사용하여야</u> 한다.</p> <p>③ <u>잔표와 수표가</u> 끝난 <u>관람권은</u> <u>회관</u> <u>사용을</u> 마친 직후 <u>관장이</u> 지정한 <u>검사공무원이</u> 매수를 확인한 다음 <u>소각한다.</u></p>

<p>④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의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p> <p>⑤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p> <p>⑥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원과 20인 이상이 동시에 관람하는 단체관람객에 대하여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p> <p>제1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관람자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④ 제10조의2에 따른 회원과 2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하는 단체관람객에 대하여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p> <p>⑤ (삭제)</p> <p>⑥ (삭제)</p> <p>제14조(입장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4. (생략)</p>
---	--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09 - 1170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150만원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9. 11. 10.

포 항 시 장 박 승 호

1. 공 고 기 간 : 2009. 11. 10. ~ 2009. 11. 17. (8일간)
2. 폐 차 장 소 : 신진폐차장, 포항종합폐차장, 동해지구종합폐차장, 흥해종합폐차장, 태평양종합폐차장(주), 대원종합폐차장
3. 폐차 예정일 : 2009. 11. 25이후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갑읍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내역참조

자동차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35 ◆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방치장소	보관장소	
2009-148	강원70다2424 이병훈	스타렉스장축11 인승 67120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345 번지 4호 1/7	포항시 북구 양덕동 풍림아이원 117동 앞 주차장내에		강릉경찰서경교 강릉시청환경, 교행, 세정
2009-152	61도2238 안중기	비스토 800415-*****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83번지 30호 5/2	포항시 남구 해도동 92-29번지 주택가 도로 상에		안강읍사무소총무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21번지19호2001카단6289 국민건강보험공단경주지사자징 경주시청교행 경주경찰서경교 포항시북구청건교 기아자동차(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992-28단지 김우영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1064-67단지
2009-168	95무3728 이정훈	마이티3K뱅크로 리 7607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10번지 7호 8/ 205호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석리아파트 앞 주차장내에		울산광역시북구청경교 포항시남구청주생건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고객지원
2009-170	43다2972 김성호	티뷰론 75081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0번지 1호 3/4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9-10 환영빌 101동 주차장내에		대구광역시서구청세무, 교통, 환경 대구서부경찰서경교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중부지사지원
2009-174	경북7주 1208 우태중	현대마티드탑트럭 52032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62번지 168호 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208-1 흥해서부초등학교 옆 도로상에		경산시청신업, 환경, 교행, 세무 청도군청세무, 환경
2009-179	경북2가19621 박지연	프라이드베타 7008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번지 286호 10/5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창포주공1차 주차장내에		포항시청교행, 환경 상성카드(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87번지2002카단2735 영덕군청재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포항북부경찰서경교 포항시남구청세무
2009-183	04다1734 이봉해	엘란트라 8409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700번지 17호 3/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리파크 107~108동 사이 도로상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창원지사장수 창원시청차등 포항남부경찰서경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중 포항시청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2009-184	경기164라5133 추동원	스쿠프 6405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번지 14호401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	고양시 덕양구정산교 성북구청교관 서초구청 교통 의정부경찰서경고 서울시 서대문구청교 지 의정부시정차등,세무,환위 경주시청세무 포항남부경찰서경고 서울동대문구청교지 포함 시북구청복고 서울 강남구청교지
2009-185	대구29더18428 김금옥	리오 58111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48번지38 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	상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2가150 단지 대구광역시달서구청건교,세무,징수,환경 국민건강보험공단대 구달서지지사지대 구광역 시중구청교행 대구광역시서구청지대 구광역 시남구청지교,세무 대구달서경찰서교통,경고 포항시남구청건교 안산상록경찰서경고
2009-186	경북33가8854 정현미	마티즈 7112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55 번지 10호 22/7 상호빌라 202호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	포항북부경찰서교통,경고 삼성카드(주)서울 특별시중구 을지로1-872002카단8800 웰지카드 (주)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792002카단11098 (주)스카이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강남구신 사동586-32003카단156221 포항시북구청건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187	경북27가2332 박병하	프린스2.0MT 59120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번 지 14호 5/4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8 동해지구종합폐 차장내에	김경철 포항시남구오천읍구정리41-108영남아 파트가-105단지 포항북부경찰서교통 국민건강 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지정 재정경제부총무 포 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남부경찰서교통, 경고 포항시북구청세무 구미시청교행 울산중 등
2009-188	경북8가5328 이원준	포터 4404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9 번지 20호 3/4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81-1 포항해양경찰서 옆 노상에	포항시청교행,환위 포항시북구청사회,세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북부경찰서교 통
2009-199	92보4789 김영일	포터초장축더블 캠 690704-*****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번지 41호 17/1	포항시 북구 장성동 866 현진에버빌 1단지 104동앞 주차장내에	서울은평구청교지 서울은평경찰서경고 서초 구청주관 은평구청세무,교행 군포시청교지 서 울관진구청주관 포항시북구청건교 국민건강보 험공단 강북지사장고객지원 강북구청세무 강
2009-200	경북29마3960 김성원	아반떼 6704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13 번지8호	포항시 북구 두호동 나 원횡집 앞 주차장내에	포항시남구청세무,건교,남사회 포항시북구청 건교 포항남부경찰서교통 군포복지재단포항지 사장수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환

2009-201	09누 1480 이현봉	포텐서LPG 5707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9번지 22호	포항시 남구 해도동 우 리치원 뒤 노상에	대전둔산경찰서경교 인천광역시계양구경교행 대전차량등록사업소차등 부천시원미구청교지 성남시분당구청교지 대전광역시서구청환행,세 무 인천광역시남동구청교인, 주관 부천시청교행 마포구청교지
2009-208	85두6238 김완준	프라이드밴 6909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87번지 21호 9/5	포항시 북구 죽도동 636-3 샘터교회 마당내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환위
2009-214	경북28다7571 이경효	엘란트라 6804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21번지 38호 21/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량내에	포항시북구청건교 달성군청세무 포항시남구 청건교 포항남부경찰서경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차정
2009-215	경북29다9348 박창교	쏘나타II12.0LPG 401213-*****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815번지 3/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량내에	봉화군종합민원처리과민원, 새경 대전광역시 서구청교통 봉화경찰서교통, 안교 포항시청교행 포항시북구청건교
2009-216	경북29마7449 박성근	크레도스 540612-*****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458번지 1호 11/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량내에	정지성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45세종0641-604 단저 포항시청교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평지사 징급 은평경찰서교통 울산광역시중구청교행 은평구청교행 포항북부경찰서교통, 경교 포항시북구청세무 부산광역시중구청교행 울산광역시 남구청교행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건교 경주시청교행
2009-217	경북2가2934 신천호	엑셀 7607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번지 32호 21/2 상대원룸 103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량내에	포항시북구청사합, 세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수경 포항시남구청세무
2009-218	경북2너2137 이상수	엘란트라-오토메 틱 6404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727번지 5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량내에	L카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679단지 포항북부경찰서교통, 경교 경주시청교행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세 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수
2009-219	경북31가2576 김은희	티코(T100)오토 6901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52번지 4/유일그랜드아파트 302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량내에	포항시남구청건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북부경찰서경교

2009-220	경북3리9458 남우석	쏘나타투2.0 530906-*****	경상북도 안동시 외룡면 태리 121 번지 7호 12/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상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단지 안동경찰서경교 안동시청교동,세정 대구수성구청세무
2009-221	경북34누5241 이성안	쏘나타 7208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1번 지 308호 17/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포항시청교동 포항북부경찰서교동 부천시청 교지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 세무,건교 경주시청교동 포항시남구청세무
2009-222	경북3가7485 이승재	아반떼 7709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12 번지 41호 18/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LG캐피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679 단지 포항시청교동(주)경북상호저축은행 경 북포항시북구 죽도동48-232002가단9605 포항북 부경찰서교동,경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건교 포항시남구청세무,건
2009-223	경북3다1777 안현수	엑센트 690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 평리 155번지 1호 1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포항남부경찰서경교 포항시청환위 포항시차 량등록사업소차등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남부 지원
2009-224	경북41무9287 정남희	쏘나타투2.0 650228-*****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67 번지5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상성캐피탈(주)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2가150 단지 경산시청세무,교동 현대캐피탈(주) 서울 시영등포구여의도동15-212003가단26215 성주 군청건철 대구시남구청지교 경산경찰서교동 대구시중구청교동 포항시북구청건교 성주경찰 서교동 대구시달서구청교동
2009-225	경북6다5178 박병수	그레이스 4206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31- 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현대자동차(주) 서울특별시중로구계동140-2 단지 포항시남구청환위,사회,사환,세무 포항 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영천시청경교 포항북부
2009-227	전북31마6297 장병일	엑센트 810109-*****	전라북도 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38번지 2호 (삼원자동차매상사: 상품용)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김제경찰서경교 김제시청교동 전주안산구청 가로교동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전주시덕 진구청세무 대전광역시유성구청지역교동 전주 덕진경찰서교동 전주시청환경
2009-228	경북28가7900 이효원	쏘나타투1.8 62051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12번지 1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6 신진종합페 차장내에	포항시청차등,교동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 등 포항남부경찰서경교 포항시북구청세무 국 민건강보험공단경주지사지장 경주시청강동면

2009-229	경북27디9545 홍복태	그랜저 5212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구만리 58번지 7/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폐차장내에	김순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1151-2남성선파크1-6단지 부산해운대구청건교 포항시남구청세무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
2009-231	경북1호4909 박만성	프린스2.0LPGAT 6208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6번지 1호 19/2 조양맨션 410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폐차장내에	포항시청교행 삼성카드(주)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1872002카단2961 포항시 북구청건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2009-233	경북1포4712 김태식	쏘나타투1.8 53110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784번지 2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폐차장내에	포항시청교행, 세무, 환경 포항시 북구청건교 포항북부경찰서교통, 경교 포항시남구청건교
2009-234	21버1615 한호인	쏘나타투1.8 75120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84번지 8호 3/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폐차장내에	경산시청세무, 교행 경산경찰서경교 서울시 종로구청교지 경산시청교행 서울 강서구청주관, 환경
2009-235	47어2031 (주)길자동차매상 사	쏘나타112.0LPG 28491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593번지 3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6 신진종합폐차장내에	파주시청시세 파주시차량사업소차등

포항시의회공고 제 9 호

第160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

地方自治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第160回 浦項市議會(臨時會)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

日時：2009年 11月 20日(金曜日) 午前 11時 30分

場所：浦項市議會 本會議場

2009년 11월 9일

浦項市議會議長 崔 榮 萬